



LEGAL UPDATE

기업자문

Jan. 2024

개정 벤처기업법 공포(2024. 1. 9.) (I)

- 개정 벤처기업법의 주요 내용 및 벤처 투자 범위 확대 관련 -

2024. 1.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832호, 이하 “개정 벤처기업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 1. 9. 공포되었습니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 7. 10. 시행 예정).

이번 개정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인재유인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벤처기업법상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진적 투자방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화우 자문그룹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 편의 뉴스레터로 개정 벤처기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번 뉴스레터는 그 첫번째 편입니다.

1. 개정 벤처기업법 공포(2024. 1. 9.) (I) - 개정 벤처기업법의 주요 내용 및 벤처 투자 범위 확대 관련

2. 개정 벤처기업법 공포(2024. 1. 9.) (II) -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의 도입

1. 개정 벤처기업법의 주요 내용

①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왔던 벤처기업법의 상시화

→ 벤처기업법 유효기간(~ 2027. 12. 31.) 삭제 및 법률명 변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벤처기업 인재유치를 위한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의 도입

→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의 법적 근거 및 절차 규정 마련
→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를 위한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 등 관련 신고의무 부과

③ 벤처기업법상 투자 인정 범위 확대

→ 벤처기업법상 ‘투자’의 범위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로 확대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프로젝트 투자 등 포함)

④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 목적의 휴·겸직 허용대상 공공기관 연구원 범위 확대

→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

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제도 신설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⑥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규모 확대

→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규모를 기존 50인에서 200인으로 확대

⑦ 벤처투자유형 요건 명확화

→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 받도록 함

이하에서는 개정 벤처기업법 내용 중 확대된 벤처 투자 인정 범위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 인정요건

현행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의 유형은 ① 벤처투자유형, ② 연구개발유형, ③ 혁신성장유형, ④ 예비벤처유형으로 분류되는데(벤처기업법 제2조의2), 이 중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은 아래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② 적격투자기관의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③ 자본금 중 적격투자기관의 투자금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4개의 벤처기업 유형 가운데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법상 '투자' 인정 범위 내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벤처기업법은 '투자'의 범위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벤처 투자방식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서는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과 같은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선진투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벤처기업법은 위와 같이 제한적인 투자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선진투자방식을 활용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법상 '투자'의 범위를 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전체로 확장하여, 벤처투자법에 새로이 도입된 다양한 선진적 투자방식들이 벤처기업법상 '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벤처기업법 제2조 제2항).

3. 새로이 도입된 투자방식의 내용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인정되던 투자 방식 외에 추가로 도입된 각 투자방식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프로젝트 투자 (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수익지분 등) 인수
- 영화, 음반, 게임 등 문화산업이나 스포츠산업,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 일부 제조업체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에 적용되며, 특정 산업분야나 아이템에 대한 단기투자가 목적인 경우가 많음

②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 라목, 동법 시행령 제3조)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계약이라고도 불리며, 투자시에는 취득할 지분을 정하지 않고 장래 제3자에 의한 후속투자시 산정된 기업가치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을 확정하도록 하는 투자계약임(투자기간 동안의 이자는 면제)

→ 객관적으로 평가된 기업 가치가 없어 투자금에 대한 적절한 지분을 합의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에 주로 활용됨

③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 마목,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은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투자할 당시 전환가액을 정하지 않고, 후속투자가 실행되었을 때 산정된 기업가치평가에 연동해 전환가액을 정한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차이가 있음

→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체결 후 제3자의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이 체결되는 효과가 발생함. 이 경우,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체결일부터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계약기간 내 후속투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하여야 함

4. 전망 및 시사점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주식 및 무담보주식연계사채 인수 등의 기존 방식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체결의 방식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으로 인정되어 각종 세제, 금융, 인력, 입지 및 해외진출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법상 '투자'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하여, 국내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및 외국투자회사 등 적격투자기관들이 다양한 선진벤처투자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창업과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벤처기업 혜택 수혜 기업의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Contacts

안상현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26

E. shahn@yoonyang.com

장황림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94

E. hliang@yoonyang.com

윤영균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6

E. ykyun@yoonyang.com

김창훈

변호사

T. (+82) 2 6182 8146

E. kch@yoonyang.com